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851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85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074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1. 7. 14.

판결 선고2021. 9. 8.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074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D이 2017. 11. 11. 발행한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7. 11. 30.으로 된 약속어음(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2278호)의 발행 행위를 25,787,0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787,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의 피고에 대한 2017. 11. 11.자 약속어음 발행 당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라 한다)의 D의 무자력 여부(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D의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3-4억 상당의 '항타항발기', ② 소송계속 중인 소송상 채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2790호(청구금액: 175,873,000원),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5711호(청구금액: 170,713,800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981호(청구금액: 188,023,804원)], ③ 주식회사 S에 대한 공증인가 T합동법률사무소 2017. 3. 14. 작성 2017년 공정증서 제18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 484,700,000원, ④ D이 U이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2016-2017년 매출 채권이 각각 존재하였고, 'D이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0996호 판결은 D이 항소심 인지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제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금 채무는 D의 소극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D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D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에게 당시 사해의사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에 대하여 열세적 지위에 놓여 있는 피고로서는 D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사해행위가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악의 역시 없었다.

나. 판단

1) D의 무자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상급심의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된 판결상의 채무만이 소극재산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항타항발기'의 적극재산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V 주식회사가 N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항타항발기를 D이 2015. 12. 28. 위 V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전차(사용기간: 2015. 12. 29.부터 본사차고 입고시까지, 임대료: 월 60,000,000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항타항발기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 D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계속 중인 채권의 적극재산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되는바, D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 소송계속 중인 채권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실제 판결로 인용된 채권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어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소송계속 중인 채권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5711호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나63993호)에서 2019. 1. 16. 조정절차로 11,000,000원을 지급받는 조정결정을 받은 것이외에는 D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계속 중인 채권을 D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적극재산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S이 D에 대하여 2017. 2. 17.자 공사대금채무(장비임대료) 484,700,000원을 부담함을

승인하고(연대보증인: W, X), 그 채무를 2017. 2. 28. 200,000,000원, 2017. 3. 31.

284,700,000원을 분할 변제하도록 정하는 이 사건 공증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위 변제기(2017. 2. 28., 2017. 3. 31.)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도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D이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D이 그 이후에 그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U 매출 채권의 적극재산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대표자로 있는 U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에 2015. 11.부터 2016. 10.까지 매출액 504,090,272원, 매입액 277,250,870원, 2016. 11.부터 2017. 10.까지 매출액 605,099,494원, 매입액 169,851,816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위 매출 채권의 거래처, 종류, 변제기,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환가될 수 있는 재산이라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로서의 적극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D에 대한 소송계속 중인 채권의 소극재산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0996호 패소 판결은 D이 항소심 인지를 납부하지 못하여 확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금 채무는 D의 소극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 D은 무자력 상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시에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D은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D에 대하여 열세적 지위에 놓여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사해행위가 해당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이지형

판사최호열